

#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      |
|----------|------|
| 의안<br>번호 | 8162 |
|----------|------|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2.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
3.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  
사

## 제안이유

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신분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2항은 위원회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에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와 정치 운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함. 해당 안건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불법한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김용원 상임위원은 동 안건을 같은 해 2월 3일 수정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권한을 부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2월 5일엔 개인 SNS에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내란동조세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것임. 이후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임.

김용원 상임위원은 현재 이 같은 행위 및 발언으로 내란선전죄, 내란 선동죄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법령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인권위원으로서 정치 운동 관여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2.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문제 행위 및 발언이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 및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어떤 주의·징계 조치를 하지 않음. 상임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발 조치되고 기관 명예에 손상을 입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운영상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다 권력자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인권위의 국가적,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였음. 비상식적인 안건을 통과시킨 동기와 목적 및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위헌·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내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3.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2월 3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2월 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하였음.

그런데, 해당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안건 성립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높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